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근로자 유의사항

1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확인 관련

○ 1월 15일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서비스 오픈 시 소득•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만 할 것
"공제신고서 간편제출 또는 간소화자료제출 절대 금지"

○ 1.15 ~ 1.19.까지는 소득 •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기관의 자료 제출 수정 기간이므로 되도록이면 1.20. 이후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소득 •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재차 확인하는 것을 권장.

○ 국세청 홈택스 공제신고서 작성 및 간편 제출 기간은 1월 27일부터 실시하여 2월 7일 마감.

☞ 기간 내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마감 이후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개인이 직접 신고.

2 공제 요건은 스스로 검토 (※주의※)

○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금융기관, 의료기관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,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된다고 하여 모두 공제받을 수 있는 자료는 아님

○ 특히, **"주택자금공제"**의 경우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되는 자료는 금융기관 등에서 제공한 금액을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므로, 구체적 공제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본인 책임 하에 제출해야 함.

○ 세액공제 대상 **"의료비"**중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여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연도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총액에서 해당연도에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 총액을 차감하여 공제대상 의료비를 계산하여 반영해야 함

3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 및 입력

○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 이외에 본인이 직접 수집한 자료에 대해서는 편리한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 시 본인이 직접 입력하고 제출한 증빙자료는 추후 관할세무서에서 회사를 통해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받음.

○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 이외의 추가 자료 제출 증빙서류와 증명서 또는 명세서를 작성하여 **담당자***에게 제출, 담당자는 경영지원팀으로 기한 내(2월11일) 제출 (모든 자료에는 본인서명 필수)
담당자* : 도급센터 → 매니저 및 행정

☞ **보험료 : 보험료증빙서류와 보험료납입증명서**
☞ **의료비 : 의료비증빙서류와 의료비지급명세서**
☞ **교육비 : 교육비증빙서류와 교육비납입증명서**
☞ **기부금 : 기부금증빙서류와 기부금명세서**
☞ **연금/저축 및 월세/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 : 해당 증빙서류와 명세서**

4 소득 • 세액공제신고서 및 해당 소득 •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

○ 근로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및 표준세액공제(13만원)만 적용하여 연말정산 진행

5 연말정산 시 과다공제를 받은 경우 (※주의※)

○ 근로자가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소득 ·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수정 신고 후 추가 납부할 세액과 별도로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, 공제요건을 반드시 정확하게 확인하여 제출. (간소화자료에서 필요 없는 항목 제외 가능)